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3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7.

발 의 자 : 이학영 · 이용우 · 허종식
조정식 · 안호영 · 박해철
박 정 · 강준현 · 한정애
서미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·제작한 경우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고,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
그런데 국가지식자원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가 납본될 수 있고 최근 AI를 활용하여 자료 발간이 용이해짐에 따라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과 보존 공간 부족 등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임.

이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보존 가치를 심사하여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4항 및 제22조

의2 신설).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납본 대상”을 “그 밖에 납본 대상”으로 한다.
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본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의2(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)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1조에 따른 도서관자료 및 제22조에 따른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납본·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도서관자료의 납본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1조(도서관자료의 납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본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⑤ 그 밖에 납본 대상----- ----- -----. <u>제22조의2(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)</u>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1조에 따른 도서관자료 및 제22조에 따른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납본·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